

2021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제6차 공무원(기간제) 근로자 채용 공고

2021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‘공무원(기간제)’을
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1년 7월 28일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

1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

가. 채용인원 : 총 1명

분 야	구 분	인 원
식품 기준규격 설정평가	정책연구원(나급)	1명

나. 담당업무 :

- 식품 기준·규격 설정 평가 업무 수행

다. 자격요건

구분		채용 인원	근무 지역	자격요건
분야	등급			
식품 기준규격 설정평가	정책 연구원 (나급)	1명	충북 오송 (평가원)	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 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한 자격 또는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[관련분야] □ (식품) 화학, 식품학, 식품화학, 분석화학, 식품공학, 화학공학, 식품영양학 등 유사분야 □ (통계) 엑셀 등 통계프로그램 사용가능자 우대

라. 공통사항 및 우대사항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장애인(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) 및 저소득층 대상자 우대
 - 장애인인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의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(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)
 - 저소득층의 범위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- 식품 유해물질 위해평가 및 분석기기 사용 유경험자 우대
- 엑셀 등 통계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

2. 보수 및 근무조건

가. 신분 :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원(기간제)근로자

나. 근무기관

-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
(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)
-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(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통근버스 운행하고 있음)
 - 통근버스 정류장 : 양재, 고속터미널, 경복궁, 불광동, 신갈, 죽전, 평촌, 인덕원, 가락시장, 잠실, 건대역

다. 계약기간

- 채용 계약일로부터 '21년 12월 31일까지
 -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재계약 요건에 적합한 경우 (예: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) 재계약 가능

라. 보수수준

- 월보수액 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
 - 1) 정책연구원(나급) 1호봉 기준: 월 2,139,400 원
 - 2) 급식비(매월 14만원) 지급
 - 3) 명절상여금(6개월 이상 근무자) 및 근무시간(09:00~18:00)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
 - 4)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3.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

가.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(이력서 및 채용지원서) 1부(채용시스템에 입력)
- ② 자기소개서 1부(채용시스템에 입력)
- ③ 주민등록초본 1부(남녀 공통제출,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)
- ④ 최종학력 증명서
- ⑤ 성적증명서 1부(대학이상 최종학력까지)
- ⑥ 연구 목록 1부
- ⑦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
- ⑧ 어학성적서, 경력증명서,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

* ①~⑤는 모든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, ⑥~⑧ 은 해당자에 한함

나. 전형일정

○ 접수기간 : '21. 07. 29(월) 14:00 ~ '21. 08. 16(월) 23:00(19일간)

○ 접수방법 :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

(www.mfds.go.kr/employ)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만 가능

○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
- 응시분야 및 응시 등급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
4. 시험방법 및 일정

시험방법	시험(예정)일자	시험장소	합격자 발표 / 장소
서류전형	'21.8.17(화) 예정	-	개별(유선문자)통보
면접시험	'21.8.19(목) 예정	별도 통보	개별(유선문자)통보
최종발표	'21.8.19(목) 예정	-	개별(유선문자)통보 16:00 이후
근무시작일	'21.8.23(월) 예정	-	조정 가능

* 접수 현황에 따른 연장 공고 시 일정 변경 가능

** 상기일정은(서류전형, 면접시험, 최종발표) 공고 일정 등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,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

5. 기타사항

가.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기관(지역)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제출된 서류는 '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 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5. 26.] [법률 제17326호, 2020. 5. 26., 타법개정]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나. 자격증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·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다.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,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, 지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마.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문의 :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이지만 주무관 ☎ 043-719-4259

6.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

- 기본증명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·초본 1부(남녀 공통제출,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, 주민번호 모두 표기)
-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통장사본 1부
- 신원진술서(약식) 1부
- 사진 2매 제출(반명합판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, 시·군·구청장 발급)